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6240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3. E

변론 종결 2019. 5. 15.

판결 선고 2019. 6.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57,094원 및 그 중 32,484,375원에 대하여 2018.9. 28.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9. 27. 기준구상원리금 잔액 33,157,094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2,484,37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다음날인 2018.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 12. 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 1) 피고 D은 피고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하여 마지못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므로 보증책임이 없다.
- 2)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C에 관한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하고,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인 피고 C이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인 피고 D에게 피고 C에 관한 정보 등을 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D의 보증채무는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 3) 원고는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인 피고 C의 신용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었으면 그 사실을 피고 D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피고 D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D은 보증책임이 없다.

4) 피고 D은 피고 C에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약 5개월만에 퇴사하였으므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2019. 1. 17.자 답변서에 의하여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나. 위 1)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D이 강요에 의하여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연대보증이 무효이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설향할 수 있다.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피고 D이 피고 C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D이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거나 그 연대보증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2)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연대보증 당시 피고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C의 신용정보 조회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대보증 당시 피고 D에게 제시된 신용정보 이외에 원고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신용정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보증인인 피고 D에게 정보를 알려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기 전에 피고 C이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보증인인 피고 D에게 알려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 3)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인 피고 C의 신용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위 4)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의 이사 등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 등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D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것은 임직원의 지위에 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를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 D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어 피고 D의 책임이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D이 2019. 1. 17.자 답변서에 의하여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

청 구 원 인

1. 본건 보험계약자인 피고 (주) C {이하 피고회사라 함}은 소외 (주) F {이하 피보험자라 함}과 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에 따른 판매장려금 반환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아래 보험계약내용과 같은 이행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 증 보 험 계 약 내 용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비고
G	(주) C	(주) F	금 40,000,000원	2018. 1. 2. ~ 2018. 1. 1.	

2. 위 보험계약체결시 위 피고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위 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위 피고회사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 1년률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음.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연 15%를 적용함}

3. 피고 D, 동 E 은 위 보험계약을 인하여, 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

4. 그 후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위 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 피보험자는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6. 28. 보험금 34,320,909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음.

5. 한편 피고들은 위 채무에 대하여 원금 1,836,534원만을 일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원금 32,484,375원 및 2018. 9. 27. 까지 지연손해금 672,719원의 총 합계금 33,157,094원과 위 원금잔액에 대한 2018. 9. 28.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피고들과 약정한 합의관할에 의거 귀원에 본소를 제기 함.